



제 429회 국회 (정기회)
제6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전기위원회를 대통령 소속 독립기구로 격상 및 권한 강화〉

■ 박지혜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1677호)

2025. 11.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신향진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박지혜의원 등 17인
2. 발의연월일 : 2025. 7. 23.
3. 회부연월일 : 2025. 7. 24.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행법상 전기위원회는 전기사업의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 및 전기사용자의 권익 보호에 관한 심의와 전기사업 관련 분쟁의 재정을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소속으로 두고 있음.

그런데 산업통상자원부 소속으로 설치·운영되는 전기위원회는 사실상 전력 판매시장을 독점하고 있는 전기판매사업자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현 구조상에서 독립적인 기관으로 보기 어려워 전기요금의 조정, 전력시장 및 전력계통 운영에 대한 감독, 전기사용자의 권익 보호 등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전기위원회를 대통령 소속으로 두고 전기사업 허가나 전기공급약관 인가 등 주요 결정·처분에 관하여 전기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도록 하는 등 전기위원회의 독립성 및 전문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전기사업등의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 및 전기사용자의 권익 보호에 관한 사항 등의 심의·의결을 위하여 전기위원회를 대통령 소속으로 둠(안 제53조).
- 나. 전기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 또는 위촉하도록 함(안 제54조).
- 다. 전기위원회는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과 전기사용자 권익보호, 전력시장 및 전기사업 등에 대한 관리 감독, 전력계통 운영에 대한 감시·감독 및 전력계통 신뢰도 유지에 관한 사항 등을 소관사무로 함(안 제54조의4).
- 라. 기타 전기위원회의 회의, 신분보장, 전문위원회, 사무조직 관련 규정을 둠(안 제54조의5·제55조·제56조·제59조 및 제60조).

Ⅲ. 검토의견

개정안은 ① 전기위원회를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에서 대통령 소속으로 격상하고(안 제53조), ② 전기사업 허가·사업 양수·합병 인가·공급약관 인가·금지행위 조치 및 과징금 부과 등 주요 결정에 대해 전기위원회의 심의 권한을 심의·의결 권한으로 강화하며(안 제7조, 제10조, 제16조, 제23조, 제24조 등), ③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 위원을 대통령이 임명·위촉하고 임기·결원 보충 절차 등을 규정하고(안 제 54조, 제54조의3), ④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 전기사용자 권익보호, 전력시장 관리·감독, 전력계통 운영 감시 및 신뢰도 유지, 금지행위 조사, 전기사업 분쟁 재정 등을 전기위원회의 소관 사무로 명시(안 제54조의 4)하는 내용임.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7조(전기사업의 허가) ① (생략)	제7조(전기사업의 허가) ① (현행과 같음)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기사업을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제53조에 따른 전기위원회(이하 “전기위원회”라 한다)의 <u>심의를</u> 거쳐야 한다.	② ----- ----- ----- ----- ----- <u>심의·의결을</u> ----- -----.
③ ~ ⑥ (생략)	③ ~ ⑥ (현행과 같음)

현행	개정안
제10조(사업의 양수 및 법인의 분할 · 합병 등) ① (생략) ②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른 인 가를 하려는 경우 제7조의 절차 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 사하여야 한다. 다만, 허가권자가 시·도지사인 경우에는 전기위원 회의 <u>심의를</u> 거치지 아니한다. 1. ~ 3. (생략) ③ · ④ (생략)	제10조(사업의 양수 및 법인의 분할 · 합병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 --- <u>심의·의결을</u> ----- -. 1. ~ 3. (현행과 같음) ③ · ④ (현행과 같음)
제12조(사업허가의 취소 등) ① 허 가권자는 전기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에는 전기위원회의 <u>심의(허가권 자가 시·도지사인 전기사업의 경우는 제외한다)</u> 를 거쳐 그 허가 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 간을 정하여 사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4호까지 또는 제4호의2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 하여야 한다. 1. ~ 14. (생략) ② ~ ⑦ (생략)	제12조(사업허가의 취소 등) ① --- ----- ----- ----- <u>심의·의결(허</u> <u>가권자가 시·도지사인 전기사업</u> <u>의 경우는 제외한다)</u> 을----- ----- ----- ----- ----- ----- ----- ----- 1. ~ 14. (현행과 같음) ② ~ ⑦ (현행과 같음)
제15조(송전·배전용 전기설비의 이 용요금 등) ① (생략)	제15조(송전·배전용 전기설비의 이 용요금 등) ① (현행과 같음)

현행	개정안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인가를 하려는 경우에는 전기위원회의 <u>심의를</u> 거쳐야 한다. 제16조(전기의 공급약관) ① (생략)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인가를 하려는 경우에는 전기위원회의 <u>심의를</u> 거쳐야 한다. ③ ~ ⑤ (생략) 제18조(전기품질의 유지) ① · ② (생략)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기사업자등이 공급하는 전기의 품질이 제1항에 적합하게 유지되지 아니하여 전기사용자의 이익을 해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기위원회의 <u>심의를</u> 거쳐 그 전기사업자등에게 전기설비의 수리 또는 개조, 전기설비의 운용방법의 개선,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제23조(금지행위에 대한 조치) ① 허가권자는 전기사업자등이 제21조제1항에 따른 금지행위를 한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기위원회의 <u>심의를</u> 거쳐 전기사업	② ----- ----- -----<u>심의·의결을</u>----- -----. 제16조(전기의 공급약관) ① (현행과 같음) ② ----- ----- -----<u>심의·의결을</u>----- -----.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18조(전기품질의 유지)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 ----- ----- ----- ----- -----<u>심의·의결을</u>----- ----- ----- -----. 제23조(금지행위에 대한 조치) ① - ----- ----- ----- -----<u>심의·의결을</u>-----

현행	개정안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조치를 명하거나 금지행위에 관여한 임직원의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전기신사업자와 허가권자가 시·도지사인 전기사업자의 경우에는 전기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한다. 1. ~ 6. (생략) ② (생략) 제24조(금지행위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징수) ① 허가권자는 전기사업자등이 제21조제1항에 따른 금지행위를 한 경우에는 전기위원회의 <u>심의(전기신사업자와 허가권자가 시·도지사인 전기사업자의 경우는 제외한다)</u>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전기사업자등의 매출액의 100분의 5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다만,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1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② · ③ (생략) 제27조의2(전력계통의 신뢰도 유지) ① ~ ④ (생략)	----- ----- ----- ----- ----- ----- <u>심</u> <u>의·의결을</u>-----. 1. ~ 6.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24조(금지행위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징수) ① ----- ----- ----- ----- <u>심의·의결(전기신사업자와 허가권자가 시·도지사인 전기사업자의 경우는 제외한다)</u>을----- ----- ----- ----- ----- ----- -----.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27조의2(전력계통의 신뢰도 유지) ① ~ ④ (현행과 같음)

현행	개정안
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력계통의 신뢰도가 제1항에서 정한 기준에 적합하게 유지되지 아니하여 전기사용자의 이익을 해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기위원회 <u>심의를</u> 거쳐 한국전력거래소 및 전기사업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제33조(전력거래의 가격 및 정산) ① (생략)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기사용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력거래가격의 상한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미리 전기위원회의 <u>심의를</u> 거쳐야 한다. ③ (생략) 제34조(차액계약) ① ~ ③ (생략)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인가를 하려는 경우에는 전기위원회의 <u>심의를</u>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경우에는 전기위원회의 <u>심의를</u> 생략할 수 있다. 제43조(전력시장운영규칙) ① · ②	⑤ ----- ----- ----- ----- ----- ---<u>심의 · 의결을</u>----- ----- -----. 제33조(전력거래의 가격 및 정산)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 -----. -----<u>심의 · 의결을</u>-----. ③ (현행과 같음) 제34조(차액계약)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 -----<u>심의 · 의결을</u>----- -----. -----<u>심의 · 의결을</u>----- -----. 제43조(전력시장운영규칙) ① · ②

현행	개정안
(생략)	(현행과 같음)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승인을 하려면 전기위원회의 <u>심의를</u> 거쳐야 한다.	③ ----- ----- ---- <u>심의·의결을</u> -----.
④ (생략)	④ (현행과 같음)
제43조의2(중개시장운영규칙) ① ·	제43조의2(중개시장운영규칙) ① ·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승인을 하려면 전기위원회의 <u>심의를</u> 거쳐야 한다.	③ ----- ----- ---- <u>심의·의결을</u> -----.
④ (생략)	④ (현행과 같음)
제53조(전기위원회의 <u>설치 및 구성</u>)	제53조(전기위원회의 <u>설치</u>) ① ----
① 전기사업등의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 및 전기사용자의 권익 보호에 관한 사항의 <u>심의와</u> 전기사업등과 관련된 분쟁의 <u>재정(裁定)</u> 을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에 전기위원회를 둔다.	----- ----- ----- <u>심의·의결과</u> ----- ----- <u>재정(裁定)</u> 등 업무를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② 전기위원회는 <u>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u> 하되, 위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의 위원은 상임으로 한다.	② ----- <u>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한다.</u>
③ <u>전기위원회의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u>	<삭 제>
④ <u>전기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전기위원회에 사무기</u>	<삭 제>

현행	개정안
구를 둔다. 제54조(위원의 자격 등) <신설> ① <u>전기위원회</u>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u>사람</u>으로 한다. 1. 3급 이상의 공무원으로 있거나 있었던 사람 2.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로서 10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사람 3. 대학에서 법률학·경제학·경영학·전기공학이나 그 밖의 전기 관련 학과를 전공한 사람으로서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으로 있거나 있었던 사람 또는 이에 상당하는 자리에 10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사람 4. (생략) 5. <u>전기 관련 단체 또는 소비자보호 관련 단체</u>에서 10년 이상 <u>중</u>	제54조(전기위원회의 구성 등) ① <u>전기위원회</u>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 위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의 위원은 상임으로 한다. ② <u>전기위원회의</u>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은 전기사업과 관련하여 풍부한 학식과 경험을 갖춘 자로서 다음----- -----<u>사람</u> 중에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2급----- ----- 2. -----15 <u>년</u>----- 3. ----- ----- ----- ----- ----- -----15년-- ----- 4. (현행과 같음) 5. <u>전기소비자 보호단체 또는 에너지사용자</u>-----

현행	개정안
<u>사한</u> 경력이 있는 사람 ② (생략) ③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신설>	-----<u>활동한</u>----- ③ (현행 제2항과 같음) <삭제> 제54조의2(위원장) ① <u>전기위원회</u> 위원장은 <u>전기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주재하며, 소관 사무를 통</u> <u>활한다.</u> ② <u>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u> <u>원장이 미리 지명한 상임위원이</u> <u>그 직무를 대행한다.</u> ③ <u>전기위원회 위원장은 국회에</u> <u>출석하여 위원회의 소관 사무에</u> <u>관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으며,</u> <u>국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출석</u> <u>하여 보고하거나 답변하여야 한</u> <u>다.</u> 제54조의3(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 ① <u>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3년</u> <u>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u> ② <u>위원의 임기가 만료되거나 임</u> <u>기 중 위원이 결원된 때에는 임</u> <u>기 만료 또는 결원된 날부터 30</u> <u>일 이내에 후임자를 임명 또는</u> <u>위촉하여야 한다.</u> ③ <u>결원이 된 위원의 후임으로</u>
<신설>	

현행	개정안
<신 설>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새로이 개 시된다. 제54조의4(전기위원회의 소관사무) ① 전기위원회의 소관사무는 다 음 각 호의 사무로 한다. 1.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 및 전기 사용자 권익보호에 관한 사항 2. 전력시장 및 전기사업 등에 대 한 관리 감독 및 감사등에 관한 사항 3. 전력계통 운영에 대한 감시· 감독 및 전력계통 신뢰도 유지 에 관한 사항 4. 금지행위에 대한 조사 및 조치 등에 관한 사항 5. 전기사업 관련 분쟁의 재정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률 에서 전기위원회의 사무로 정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전기위원회의 소관 사무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4조의5(전기위원회의 회의) ① 전기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하 고 위원장은 그 의장이 된다.
<신 설>	

현행	개정안
제55조(위원의 신분보장) 전기위원회 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 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해임 또 는 해촉되지 아니한다. 1. 2. (생략)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 과반수 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 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는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 다. ③ 그 밖에 전기위원회의 회의운 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 로 정한다.
제56조(전기위원회의 기능) ① 전기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제57조에 따른 재정을 한다. 1. ~ 13. (생략) 14. 다른 법령에서 전기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규정한 사항 15.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심의를 요청한 사항 ② 전기위원회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전력시장의 관리·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건의를	제55조(위원의 신분보장) ----- ----- ----- -----면직----- -----. 1. 2. (현행과 같음) 제56조(전기위원회의 심의·의결 사 항) ----- -----심의·의결하고----- -----. 1. ~ 13. (현행과 같음) 14. ----- 심의·의결 사항으로----- -- 15. -----심의· 의결을----- <삭 제>

현행	개정안
할 수 있다. 제59조(전문위원회) ① 전기위원회는 그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u>분야별로</u>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전문위원회의 조직·기능·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u>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u> 정한다. 제60조(조직 및 운영) 이 법에 규정된 것 외에 전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u>사항은 대통령령으로</u> 정한다. <신 설>	제59조(전문위원회) ① ----- <u>--심의·의결 사항 및 재정에 관한 사전검토 또는 자문이나 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u> <u>-----위원회</u> <u>소속으로-----</u> <u>--.</u> ② ----- <u>대통령령으로-----.</u> 제60조(사무조직) ① 전기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u>사무조직을</u> 둔다. ② <u>사무조직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u> 정한다.

*소관 부처 변경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는 ‘기후에너지환경부’로 변경 필요

현행 전기위원회는 「전기사업법」 제53조1)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소속으로 설치되어 전기사업의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 전기사

- 1) 제53조(전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전기사업등의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 및 전기사용자의 권익 보호에 관한 사항의 심의와 전기사업등과 관련된 분쟁의 재정(裁定)을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에 전기위원회를 둔다.
- ② 전기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의 위원은 상임으로 한다.
- ③ 전기위원회의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 ④ 전기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전기위원회에 사무기구를 둔다.

용자 권익 보호 및 분쟁 재정을 담당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최근 3년간 전기위원회는 2023년 15회 302건, 2024년 15회 342건, 2025년 상반기 7회 189건의 안전을 처리하였으며, 이 중 전기사업 인허가 등 심의안전이 다수를 차지함.

최근 3년간 전기위원회 개최 현황

	연도별 개최 횟수	심의·의결 안전 수	심의·의결 유형별 건수			
			규칙·약관 심의	전기사업 인·허가 등	분쟁조정	운영 지침
2023	15회	302건	59건	238건	3건	2건
2024	15회	342건	63건	275건	2건	2건
2025	7회	189건	25건	164건	0건	0건

*자료: 기후에너지환경부

실제 처리 결과도 2023년 98.3%, 2024년 98.8%, 2025년 100%가 장관 최종결정으로 이어져(전기위원회 심의 후 장관 최종 결정), 위원회 자체 의결 건수는 미미한 수준에 그치고 있음.

최근 3년간 심의·의결 안전 현황

	심의안전	의결안전	계
2023	297건(98.34%)	5건(1.66%)	302건
2024	338건(98.83%)	4건(1.17%)	342건
2025	189건(100%)	0건(0%)	189건

주) 심의안전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최종 결정 필요

*자료: 기후에너지환경부

내부 운영규정(기후에너지환경부 고시 제2016-203호)에 따르면 위원회 안건은 보고·심의·의결로 구분되며²⁾, 심의사항은 「전기사업법」 제56조³⁾에 따른 인허가, 요금, 약관, 금지행위 조치 등 다수의 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음.

반면 「전기사업법」 제57조⁴⁾는 요금·약관, 수급조절금액, 손실보상

2) 「전기위원회 운영·재정(裁定) 등의 관리에 관한 규정」 제12조(안전의 작성 및 상정) ① 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은 다음 각 호로 구분한다.

1. 보고안건 : 위원장의 결정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 또는 의결을 필요로 하지 않는 경미한 사항
2. 심의안건 : 법 제5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
3. 의결안건 : 법 제5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재정을 결정하는 사항

3) 제56조(전기위원회의 기능) ① 전기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제57조에 따른 재정을 한다.

1. 제7조에 따른 전기사업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에 관한 사항
2. 제10조에 따른 전기사업의 양수 또는 법인의 분할·합병에 대한 인가에 관한 사항
3. 제12조에 따른 전기사업의 허가취소, 사업정지, 사업구역의 감소 및 과징금의 부과에 관한 사항
4. 제15조에 따른 송전용 또는 배전용 전기설비의 이용요금과 그 밖의 이용조건의 인가에 관한 사항
5. 제16조 및 제16조의3에 따른 전기판매사업자의 기본공급약관 및 보완공급약관의 인가에 관한 사항
6. 제24조의2에 따라 준용되는 제16조에 따른 구역전기사업자의 기본공급약관의 인가에 관한 사항
7. 제18조제3항에 따른 전기설비의 수리 또는 개조, 전기설비의 운용방법의 개선, 그 밖에 필요한 조치에 관한 사항
8. 제23조제1항에 따른 금지행위에 대한 조치에 관한 사항
9. 제24조제1항에 따른 금지행위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
- 9의2. 제33조제2항에 따른 전력거래가격의 상한에 관한 사항
- 9의3. 제34조제3항에 따른 차액계약의 인가에 관한 사항
10. 전력시장운영규칙 및 중개시장운영규칙의 승인에 관한 사항
11. 전력계통 신뢰도 관리업무에 대한 연간계획 및 실적, 관계 규정의 제정·개정 및 폐지 등에 관한 사항
- 11의2. 제27조의2제5항에 따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조치명령에 관한 사항
12. 전기사용자의 보호에 관한 사항
13. 전력산업의 경쟁체제 도입 등 전력산업의 구조개편에 관한 사항
14. 다른 법령에서 전기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규정한 사항
15.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심의를 요청한 사항

4) 제57조(전기위원회의 재정) ① 전기사업자등 또는 전기사용자 등은 전기사업등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에 관하여 당사자 간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전기위원회에 재정을 신청할 수 있다.

1. 제15조에 따른 송전용 또는 배전용 전기설비 이용요금과 그 밖의 이용조건에 관한 사항
2. 공급약관에 관한 사항
3. 제29조에 따른 수급조절 명령에 따른 금액의 지급 또는 수령 등에 관한 당사자 간의 협의에 관한 사항
4. 제72조에 따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5. 제90조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사항
6. 제90조의2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사항

등 분쟁성 사안에 한정해 재정(의결) 권한을 부여하고 있음. 그러나 실제 운영은 대부분 심의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법령과 규정상 부여된 의결(재정) 권한이 충분히 활용되지 못하는 문제가 있음.

이로 인해 주요 정책·제도적 결정에서 전기위원회가 독립적이고 실질적인 의결기능을 수행하기 어렵고, 최종 결정권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집중되는 구조적 한계가 존재함.

개정안은 위와 같은 한계를 해소하기 위하여 전기위원회를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에서 대통령 소속으로 격상하고, 주요 인허가·요금·시장운영 규칙 등 핵심 사안에 대해 단순 심의가 아니라 심의·의결을 거치도록 함으로써 위원회의 독립성과 실질적 권한을 강화하려는 것임.

아울러 위원회 구성과 임기, 소관 사무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여 조직적 기반을 강화하고,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 전기사용자 권익 보호, 전력시장 관리·감독, 전력계통 신뢰도 유지, 전기사업 분쟁 재정 등 본연의 역할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려는 취지임.

개정안은 전기위원회를 대통령 소속 독립기구로 격상함으로써 중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고, 심의·의결 구조를 도입하여 주요 사안에서

7. 그 밖에 전기사업등과 관련한 분쟁이나 다른 법률에서 전기위원회의 재정사항으로 규정한 사항

위원회가 실질적인 규제·감독 기구로 기능할 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임.

또한, 소관 사무와 조직 규정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제도 운영의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전력시장 운영의 공정성과 전기사용자 권익 보호를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만, 전기위원회를 대통령 소속으로 격상하는 방안은 규제기관의 독립성 제고라는 취지에는 부합하나 전력정책을 총괄하는 기후에너지 환경부와의 정책적 연계성이 약화될 우려도 제기될 수 있으므로 이를 감안한 논의가 필요해 보임.

참고로 해외 사례를 살펴보면, 미국 연방에너지규제위원회(FERC)는 에너지부(DOE), 독일 연방네트워크청(BNetzA)은 연방경제기후부(BMWK), 영국 가스전력시장청(Ofgem)은 에너지안보·넷제로부(DESNZ) 소속으로 운영되는 등 부처 소속을 유지하면서 독립성을 보장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음.

또한, 전기위원회의 심의 권한을 심의·의결로 강화하는 부분은 위원회의 기능을 확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이나, 위원회 의결이 실질적인 구속력을 갖는 경우 정책적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질 수 있

으므로, 인·허가 절차상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의 최종 결정과의 관계 설정을 논의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아울러 개정안은 위원회의 소관 사무 규정을 신설(안 제54조의4)하고 있으나 현행 제56조(전기위원회의 기능)에도 유사한 규정이 존재하여 중복 소지가 있으므로, 조문의 정합성 측면에서 추가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전기위원회의 ‘심의’를 ‘심의·의결’로 명시하는 개정안은 위원회 심의 절차의 독립성을 강화할 수 있으므로 동의하나, 전기위원회를 대통령 소속으로 격상하는 안은 전력정책을 총괄하는 기후에너지환경부와는 협조체계가 약화될 수 있어 소속을 현행대로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함.

참고로 현재 ‘전기위원회의 독립성 강화’와 관련하여 우리 위원회에 2건의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⁵⁾이 계류중이므로, 향후 심사시 함께 논의될 필요가 있음.

5) [2207823]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의원 등 11인)
[2210572]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허성무의원 등 13인)

참 고

전기위원회 독립성 강화 관련 3개 법안 비교

구 분	현 행	김정호의원안 (‘25.1 발의)	허성무의원안 (‘25.5 발의)	박지혜의원안 (‘25.7 발의)
명칭	전기위원회	전기가스열 위원회	전기위원회	전기위원회
소속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	국무총리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	대통령
규제 대상	전기	전기, 가스, 열	전기	전기
법적 성격	행정기관위원회 (행정위원회)	중앙행정기관	행정기관위원회 (행정위원회)	행정기관위원회 (행정위원회)
법적 권한	위원회 <u>심의</u> 를 거쳐 <u>기후부 장관이</u> <u>인허가</u>	위원회 권한으로 <u>직접 인허가</u>	위원회 <u>심의 및</u> <u>의결</u> 을 거쳐 <u>기후부 장관이</u> <u>인허가</u>	위원회 <u>심의 및</u> <u>의결</u> 을 거쳐 <u>기후부 장관이</u> <u>인허가</u>
전문 기관	없음	전기가스열 감독원	한국전력감독원	없음

문 의 처

02)6788-5537